

EY한영 월간 Public Policy Newsletter

2026년 4월호

발행일 | 2026년 4월 27일

In Focus

- +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권한 확대...증권위 검찰 고발 없이 수사 착수 가능 [\(바로가기\)](#)
- + 호주 정부, 회계·컨설팅 업계 규제 '대폭 강화' 조치 발표 [\(바로가기\)](#)
- +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개정안 공개...형식적 'O/X' 대응에 제동 [\(바로가기\)](#)
- + EU, '26~'30년 성평등 전략 발표...임금, 고용기회, 리더십 참여 등 성평등 개선조치 제시 [\(바로가기\)](#)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Contents

01	국내 업데이트	3
	1.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	
	▪ 금감원, '26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분식회계 무관용 원칙 확립할 것"	4
	▪ 기준원, K-IFRS 질의회신 등 공개	5
	2. 자본시장	
	▪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권한 확대...증선위 검찰 고발 없이 수사 착수 가능	6
	▪ 금융위, 3차 상법 개정 맞춰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공시 대상 모든 상장사로 확대	8
	▪ 증선위,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1호 사건 검찰 고발	9
	3. ESG·지속가능성	
	▪ 거래소, 배당절차 개선 기업에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10
	▪ 정부·생기원,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	11
	▪ 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 개최	12

02 | 해외 업데이트 13

1. 해외 일반

- 호주 정부, 회계·컨설팅 업계 규제 '대폭 강화' 조치 발표 14

2. ESG·지속가능성

-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공개...형식적 'O/X' 대응에 제동 18
- EU, '26~'30년 성평등 전략 발표...임금, 고용기회, 리더십 참여 등 성평등 개선조치 제시 20
- IPSASB, 정부를 위한 '공공부문 기후 공시기준' 공식 발표 ...'28년 시행 22

3. 기술·디지털

- 중국, AI 생성 표시 의무 위반 콘텐츠 단속...SNS 계정 1만 3천여 개 처분 및 위반 정보 54만여 건 삭제 23

03 | 주목할 간행물 24

01

국내 업데이트

금감원, '26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분식회계 무관용 원칙 확립할 것'

3월 29일 금융감독원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 방향과 실시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분식회계 무관용 원칙 확립	- 고위험군 집중 감시 및 엄정 감리를 통한 부실기업 신속 퇴출 - 코스피200 기업 심사·감리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획기적 주기 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 이와 더불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금융위, 회계 및 감사 품질 제고 방안 발표...회계부정 지시자 최대 5년 상장사 퇴출하고 감사인 선정 시 이해충돌 차단장치도 도입” 참고) - 과징금 부과 권한을 조정하고,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대응 시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 10억원 이하 과징금은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부과 권한을 현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위임할 방침
회계감독 프로세스 선진화	-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위반동기(고의·중과실) 판단기준을 구체화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조사 및 제재 선진화 착수...‘피조치자 방어권’ 강화 논의” 참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개선방안을 마련¹하고, 회계이슈(테마) 신속 점검을 실시 '26년 회계이슈 :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공급자 금융 약정 공시,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심사·감리 전 과정에 스마트 감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지적사례 등을 오픈 API²로 제공
감사인 감리·감독 강화	- 회계법인 규모, 품질관리 평가 결과, 감사투입시간 등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하고, 조치수단을 다양화³ - 대형 회계법인 내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공시를 확대 (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금융위, 회계 및 감사 품질 제고 방안 발표...회계부정 지시자 최대 5년 상장사 퇴출하고 감사인 선정 시 이해충돌 차단장치도 도입” 참고) - 품질관리 평가 결과 공개를 추진⁴하고,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자체적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특히 '25년도(재무제표 기준)부터 자산 1천억원~5천억원(타 구간 대비 최다 비중)인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에 포함된 데 따름.

²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대용량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³ 기존의 조치(등록취소, 지정제외점수) 외에도 예를 들어 업무정지, 경고·주의 등의 제재를 도입할 수 있음.

⁴ 전년 대비 평가수준의 개선 정도를 중심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회계법인 서열화 등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전년보다 10사 늘어난 170사에 대해 실시하고, 감사인 감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 10사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준원, K-IFRS 질의회신 등 공개

3월 31일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정규 질의회신 1건과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3개월 단위로 공개해 왔음.

이번에 공개된 K-IFRS 정규 질의회신 1건은 2025년 11월에 회신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임. 또한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에는 2025년 7월에 회신한 '[초인플레이션 경제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평가](#)'가 포함됨.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권한 확대...증권위 검찰 고발 없이 수사 착수 가능 In Focus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및 통보 없이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¹가 가능해지는 등, 특사경의 권한이 확대되어 불공정거래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4월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수사를 담당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집무규칙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발표](#)함.

특별사법경찰이란?

- 특정 분야(산림, 식품, 환경, 보건, 세무 등)의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기 위해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란?

-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 법무부, 대검찰청, 금감원 협의를 거쳐 '19년 출범한 강제 수사 조직으로, 출범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사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감원 본원과 남부지검에 배치되어 운영됨.
- 이후 '21년에 운영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에 대해 협의한 후 직무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이 [발표](#)됨. 이에 따라 금감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특사경이 확대되어 '22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도 특사경팀이 [설치](#)됐으며,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 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²'를 설치하고 운영해왔음.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 개시 범위의 확대

- **출범 당시:** ①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만 해당
- **'22년 개편 시:** 위에 더해 ②증권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③금융위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인지수사) ④조사 중 수사 전환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됨.
 - 단, ③인지수사 및 ④조사 중 수사 전환 사건은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수심위 심의를 거쳐야 함.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개시 대상 중 '④조사 중 수사 전환 사건'을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고 밝힘.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한정되는 반면, '수사'가 개시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사와 차이가 있음.

² 당시 ①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②조사담당관(검사), ③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권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④금감원 부원장보 ⑤(필요시)증권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으로 구성됨

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사건 범위 확대

- 기존: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 및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 중인 사건 중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전환 필요성을 인정한 사건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하는 등 검찰의 지휘를 받음.)
- 개정: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 중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전환 필요성을 인정한 사건

한편, 이번 개편에서는 심의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재편하고, 운영 관련 제도도 정비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심위 인적 구성 재편: 현행 5인 유지하되, 위원 구성 변경

현행		개정	
금융위	-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금융위	(좌동)
금감원	공사·조사 부원장보	금감원	-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 법률자문관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1인 이상의 자		

수심위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규정

- 소집요구: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는 날의 2영업일 내에 개최
- 안건상정: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음

개최일 당일 의결 원칙 규정

-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해 수심위는 개최일 당일에 의결하는 것이 원칙

한편, 이번 개정으로 증선위 고발과 검찰의 사전 판단 절차가 축소되면서 기존에 법리 판단과 절차 통제를 수행해왔던 검찰의 역할이 약해질 것이라는 점, 수사심의위원회가 외부 독립기구가 아닌 내부 조직이라는 점에서 통제 장치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금융당국은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 및 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임.

금융위, 3차 상법 개정 맞춰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공시 대상 모든 상장사로 확대

3월 30일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맞춰 모든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 내역을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배경

- 지난 2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상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자사주 소각 1년 이내 의무화" 참고)
 - 이에 따라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함.

금융위는 이러한 개정 상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자기주식과 관련된 신탁계약, 교환사채(EB) 발행 및 장내 매도 규정 등을 정비한다고 밝힘.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이행 내용 공시 강화

- **현행:**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현황' 등 구체화된 정보를 연 2회 투자자 및 일반주주에게 공시¹
- **개정:**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 **위반 시 제재:**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공시서류 제출 당시의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자본시장법상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음.

2) 신탁업자 규율을 강화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상장법인은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계약기간 중 제한적으로 처분이 허용됨. 또한 자기주식을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했음.
 - **문제점:**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었음. 또한 자기주식을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설정하는 구조를 활용하여, 표면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자본구조를 관리하고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가 상승 시 특정 투자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된 물량으로 남겨두어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사실상 회피할 수 있었음.
- **개정:**
 -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신탁계약 기간 중에는 자기주식의 처분이 금지되고, 신탁계약 종료·해지 시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 신설
 -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금지
 - 주주균등처분 또는 제3자 처분 외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 금지 등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자기주식 1% 이상 보유 상장사 외의 상장사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주주총회 승인 시점에 처분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 및 일반주주가 실제로 자기주식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활용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져 자기주식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증선위,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1호 사건 검찰 고발

3월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힘](#).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특정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선정한 후,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하고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¹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

- '25년 7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보다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그 방안 중 하나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참고)
 -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로, 한 공간에 근무하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척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대주주·경영진 관련 사례 ▲다수의 투자자를 유인·기망하는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담당함.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1호 사건으로, 진행 중이던 범죄 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규모의 확산을 차단하고 부당이득 환수 재원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힘.

합동대응단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강력히 적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¹ 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

거래소, 배당절차 개선 기업에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앞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됨.

3월 27일 한국거래소는 배당절차 개선을 촉진하고 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와 우수기업 선정 지침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배경

- 2023년 1월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해 기업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유도함.
- 또한 2024년 12월 금융감독원은 관행 개선을 위해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기재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지속됨. (본 뉴스레터 2023년 2월호 "금융위,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이르면 내년부터 배당액 확인 후 투자 가능" 및 2025년 1월호 "금감원, 배당절차 개선 촉진 위해 사업보고서 개정...배당금 먼저 확정했는지 여부 공시 필요" 참고)

거래소는 선진화된 배당절차의 시장 확산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등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 세 차례의 상법 개정과 2월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등 주요 내용을 개정된 가이드라인·해설서에 반영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더해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비재무지표 예시로 '배당절차 개선'을 새롭게 추가함.
 - 즉, 주주들이 배당액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 확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이를 실제 배당에 적용한 기업의 경우에 해당함.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금감원, 더 상세한 '기업 배당 정보' 공시 요구...배당정책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결산·분반기 배당 구분 기재" 참고)

구분	기존	개선
	배당받을 주주 먼저 확정 → 배당액 확정	배당액 먼저 확정 → 배당받을 주주 확정
결산배당 상법 제354조 법무부 유권해석 ('23.1월 배포)	- 기업들은 통상 12월 말일을 '주총 의결권 기준일'(주총에서 투표권 있는 주주 명단 확정일)이자 '배당 기준일'(배당받을 주주 명단 확정일)로 정함 - 이에 따라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진 후인 다음 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이 확정됨	- 기업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유도함 - 이 경우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이 결정되고 난 후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됨
상장사 분기배당 자본시장법 개정 ('24.12월 개정)	- 상장회사는 3·6·9월 말일이 배당 기준일 - 그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하여 배당할 수 있음	3·6·9월 말일 현재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함 - 따라서 기업은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체계에 반영:

-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실제 배당에 이를 적용한 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함.
-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 총 3단계 평가체계로 구성되는데, 이 중 2차 정성평가 항목 중 '주주환원 및 투자노력' 평가 시 배당절차 선진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지침이 개정됨.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매년 5월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음. 밸류업 우수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는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는 것으로, 지난해 3월 [공개](#)된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정 유예를 원하는 회사는 매년 6월 1일부터 3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그해 9월¹ 지정 유예 여부가 결정됨.

정부·생기원,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3월 30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CBAM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발표](#)함.

배경

- EU CBAM은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의무만 적용되는 전환기간을 거쳤으며, '26년 1월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까지 포함하는 확정기간이 시작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계부처와 함께 15건의 CBAM 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환경부, CBAM 도입 지원방안 발표...자문 및 설비 투자 제공 등 15건 포함" 참고)

이번 매뉴얼은 국내 수출기업이 CBAM 확정기간의 핵심 변경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세히 해설하고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도 제시하는 등 기업들의 실무 활용도를 높임.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단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과 달리,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매뉴얼이 우리 기업들이 정확한 인증서 수량을 산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¹ 12월 말 결산법인의 주기적 지정이 매년 10월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함.

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 개최

3월 31일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세미나는 최근 확정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공시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초기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됨.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적용 범위, 공시 요구사항, 온실가스 산정, 기후 시나리오, 재무제표 연계성 등 주요 이슈와 초기 적용 쟁점이 다뤄짐. 기준원은 공시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행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으며, 3월 31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함. 이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임.

또한 2월 26일에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공시기준을 확정·발표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금융위,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발표...30조 이상 대형 상장사 FY27부터 공시 의무화" 참고)



02

해외 업데이트

호주 정부, 회계·컨설팅 업계 규제 '대폭 강화' 조치 발표

In Focus

지난 2월 호주 재무부가 회계·컨설팅 법인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개괄적으로 [공개](#)함.

각 조치에는 호주 연방정부가 용역 등을 수행하는 조달업체를 평가할 때 더 이상 전문성만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윤리·거버넌스·책임성 구조가 검증되어야만 공공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음.

이번 발표에는 지난 2024년 11월 기업 및 금융 서비스에 관한 호주 상하원 공동 위원회(Joint Committee on Corporations and Financial Services)가 회계감사 및 컨설팅 업계의 윤리성 및 책임소재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도 포함됨.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호주 의회, 회계·컨설팅 법인 책임 강화 촉구...감사인 공개입찰·강제교체 의무화 등 도입 권고” 참고)

배경

- 2023년 초 호주의 한 대형 회계·컨설팅 법인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련 용역을 수행하던 중, 법 개정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고객사에 유출한 사실이 밝혀짐. (본 뉴스레터 2023년 9월호 “호주, 세제개혁안 발표...조세회피 처벌 강화 및 컨설팅·회계감사업계 규제 개선에 초점” 참고)
- 이를 계기로 그해 8월 호주 연방정부는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세제개혁 계획 및 관련 패키지 법안을 발표함. 또한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재무부는 회계·컨설팅 법인의 지배구조 이슈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본 뉴스레터 2024년 7월호 “호주 재무부, 회계감사·컨설팅 법인 지배구조 이슈 진단 위한 의견수렴 개시” 참고)
- 한편, 의회는 10여 차례의 공청회 개최, 해당 회계법인에 관한 조사 보고서 발행과 더불어 ▲정부기관의 회계·컨설팅 법인 사용과 관련한 투명성 ▲업계 전반의 윤리적 책임 및 거버넌스, 투명성, 이해상충 관리 실태에 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함.
 - 그 결과 2024년 6월 재무 및 공공행정에 관한 상원 참조¹위원회(Senate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References Committee)가 “정부기관이나 공공서비스 부문이 체결한 200만 호주 달러(약 18억원) 이상의 모든 컨설팅 계약에 관한 상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재무장관이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법률 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또한 2024년 11월 기업 및 금융 서비스에 관한 상하원 공동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회계·컨설팅 업계의 윤리성 및 책임소재 강화와 관련한 권고안이 포함되었는데, 재무부의 이번 발표는 이 권고안을 반영하고 있음.

재무부의 이번 발표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호주 상원의 각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정책 및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참조위원회(References Committee)와 법안 심의 및 예산 검토를 담당하는 입법위원회(Legislation Committee)로 이원화된 하위 구조를 취하고 있음.

Part 1. 정부 용역을 수행하는 컨설팅법인의 윤리성 강화

'연방 공급업자' 행동강령(Commonwealth Supplier Code of Conduct) 제정: '24.7.1. 시행

-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일체의 공급업자 및 그 임직원, 하도급업체가 계약 수행 중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행동기준으로, 가이드가 아닌 계약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작동함.
 - ▲윤리적 행동 ▲이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및 사업 관행, 행위에 대한 책임 ▲보건안전-근로자 복지 ▲행동강령 준수 사실 입증 ▲미준수 시 불이익(시정조치, 계약해지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
- 특히 윤리적 행동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업자는 연방정부 부처(Australian Public Service, APS)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APS 가치체계(APS Values)’에 준하는 수준의 가치와 행동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
- APS 가치체계가 행위의 ‘공익성’을 개별 사안별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직성, 투명성, 공정성, 법과 절차에 따라 행동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듯이, 정부 공급업자 또한 행위의 공익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행동기준을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
- ‘25년 8월 개정된 ‘계약 관리 가이드(Contract Management Guide)’는 공무원들이 계약 상해 공급업자가 상기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일체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

'23년 초 세무기밀 유출 사건: 해당 법인의 윤리적 적합성에 관한 최종 보고서' 25.8월 재무부 웹사이트에 공개

- 사건 발생 직후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뿐 아니라 복수의 조사-수사가 개시되고 상원까지 조사에 착수하자, 이 사안은 개인 비위가 아닌 조직 차원의 윤리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함.
-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이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23년 5월: 자체 쇄신을 위해 과학자 출신의 경영전략가에게 의뢰하여 지배구조, 조직 문화, 책임경영체계 전반에 대한 독립적 정밀 진단을 의뢰
 - ‘23년 7월: 정부 자문 사업부를 매각²하는 구조적 쇄신을 공표
 - ‘23년 9월: 약 4개월간의 집중 조사를 거쳐 작성된 외부 전문가 [진단 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혁신을 위한 이행 계획(Commitments to Chang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이행에 착수
- 재무부는 이 사건을 “공급업자의 윤리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인이 정부 공급업자로서 적합한지 검토했으며, 최종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림.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진단 보고서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외부 검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법인의 조직문화, 리더십, 내부 통제 및 책임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파악
 - 다만 ‘25년 8월 현재 시점에서는 거버넌스·윤리·문화 쇄신을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므로 공급업자로서 윤리적 건전성을 갖춰 정부 입찰 참여 자격을 ‘조건부로 회복’했다고 판단³
 - 즉, 향후 2년간 재무부가 승인한 독립적 감시자가 쇄신 작업의 경과와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정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는 조건 명시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연방정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법인 등의 실체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공급업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² 2023년 11월 사모펀드 Allegro Funds에 매각이 완료돼 Scyne Advisory라는 독립 법인으로 신설됨. 매각 조건으로 공공부문 조달에서 수년간 해당 법인이 Scyne Advisory와 경쟁하지 않을 것이 포함됨.

³ 해당 법인은 정부 주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윤리성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정부 용역 신규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의 계속 수행은 제한하지 않기로 함.

'호주 사업자/중소형 법인' 참여 장려: 개정 연방조달규정(Commonwealth Procurement Rules) '25.11.17. 시행

- 특정 조달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호주 현지 사업자¹를 먼저 검토할 것을 의무화함.
- 특히 정부 공통 컨설팅 서비스 **패널**², 인재 채용 및 인적 자원 서비스 **패널**, 그 외 특정 패널 등을 활용함에 있어 12만 5000 호주달러 미만의 조달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를 최우선 검토해야 함.

Part 2. 회계, 감사, 컨설팅법인 규제 강화

재무부 주도 입법 조치 목록

- **'23년 패키지 법 개정:** 세무사규제감독위원회(Tax Practitioners Board, TPB) 권한 강화
 - 예: 자문업체의 비윤리적 행위(비밀유지의무 위반 등)를 전문가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권한
- **'24년 세무대리 전문직 윤리기준에 관한 행정입법:** 세무대리인 직업윤리행위기준 구체화 및 강화
 - 예: 고객/잠재 고객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일정 기간 내 명확히 공개
- **'24년 패키지 법 개정:**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이 조세회피 조장 자문업체 등을 식별·제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강화하고, TPB 또는 ATO에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확대
 - ATO가 민사상 제재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행위발생 시점으로부터 4년' → '6년'으로 연장
 - 조세회피 조장 자문업체 벌금 상한 100배 증액 (780만 → 7억 8000만 호주달러=약 8250억원)
 - ATO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특정한 절세 방식이 ATO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범위 확대

범정부적 대응: 규제체계 강화,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목록

- '23년 12월 개시: 세무사규제감독위원회(TPB)가 운영하는 제재 제도 검토
- '24년 5월 개시: ATO와 TPB 각각의 조사 및 정보 수집 권한에 대한 검토
- '24년 5월 개시: 회계·컨설팅 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포괄적 검토
 - 파트너십 구조의 거버넌스 및 규제 이슈
 - 비감사업무와 잠재적 이해상충
 - 규제당국의 역할과 권한
 - 투명성, 공시 정보, 보고 이슈
 - 감사시장 내 경쟁 및 회복탄력성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고조치
- '24년 7월 개시: 세무대리인 등록요건 검토
- '24년 12월 개시: 조세회피 조장 자문업체에 적용 가능한 처벌 검토
- '24년 12월 개시: 현행 조세비밀유지법에 따른 규제당국의 조세 정보 접근 제한을 해제하는 안 검토
- '24년 12월 개시: 연방정부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활용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 (예정): 세무 분야 및 기업일반 분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검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해당 사업자뿐 아니라 모기업까지 ▲지분의 50% 이상이 호주인 소유이거나, 호주 증권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며 ▲세법상 호주 거주자이며 ▲주 영업 소재지가 호주에 있는 경우로 **조정**함.

² 연방정부 부처들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적격성을 평가해 둔 공인 공급업자 목록. 이하 동일함.

Part 3. 회계기준제정기구/감사기준제정기구/감독당국 통합 방침

'25년 10월 의견수렴 개시

- 규제 일관성은 높이고 기능 중복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개 기구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률 초안 공개
 - 호주회계기준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 감사·인증기준위원회(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이처럼 이번 재무부의 발표는 호주 정부가 회계·감사·컨설팅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흐름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공개...형식적 'O/X' 대응에 제동 In Focus

2월 26일 일본 금융청(FSA)과 도쿄증권거래소(TSE)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함.

2015년 처음 시행된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CoE) 방식으로 이행되어 왔는데, 2018년과 2021년에 각각 한 차례씩 개정된 바 있음. 이번 3차 개정은 형식적 준수에서 벗어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중심의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배경

- **모범규준 구조:**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다음 5대 분야의 '기본원칙(General Principles)'과, 이에 대응하는 ▲'원칙(Principles, 기본원칙을 구체화한 판단 기준)' 및 ▲'보충원칙(Supplementary Principles, 원칙을 설명·보완하며 판단을 보조하는 세부 항목)'이라는 3중 구조로 이루어짐.
 - 기본원칙 1: 주주의 권리 및 평등한 대우 보장
 - 기본원칙 2: 주주 외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적절한 협력
 - 기본원칙 3: 적절한 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
 - 기본원칙 4: 이사회의 책임
 - 기본원칙 5: 주주와의 대화
- **보충원칙 누적에 따른 이행상의 이슈:** 이러한 3중 구조는 기업별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원칙 중심 접근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지만, 2018년과 2021년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사회 다양성, ESG 등 새로운 관점의 기대사항을 반영해 보충원칙이 다수 추가되면서 다음과 같은 이행상의 문제가 관찰됨.
 - 기업들은 각 보충원칙이 지향하는 원칙·기본원칙의 취지를 고려하기보다는, 보충원칙 하나하나를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보고 이를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원칙·기본원칙의 준수 여부를 단순히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남.
 - 더불어 CoE 제도상으로는 특정 원칙·기본원칙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설명 없이 '준수(Comply)'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 결과 구체적인 이행 내역을 고려해 준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시 정보에는 판단의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관행상의 문제로 지적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번 3차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슬림한’ 모범기준 지향

- 보충원칙: ‘해석지침’으로 재편
 - 핵심적인 사항들은 원칙으로 격상하고, 해설적 성격을 가지는 사항들은 기준 내 ‘해석지침(Interpretive Guidance)’으로 재정비
- 원칙: 일부 문구를 다듬거나 재배치
- 기본원칙: 5대 기본원칙 중 1과 5를 통합

‘준수’로 판단한 근거 설명 권고

- 원칙 준수 시(Comply)에도 설명(Explain):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해당 조치를 통해 원칙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칙 미준수 시 상세 설명(Explain) 필요: 정형화된 문구(boilerplate)로 구성된 피상적인 설명은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각 기업은 자사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설명’을 제시해야 함

중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 촉진

- 성장 투자와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규정
 -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 경로 설정
 - 성장을 위한 투자(자본적 지출, 연구개발, 인적자본,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 구체적 실행 방안 설명
 - 공시된 사업 전략 및 계획을 기반으로 자원 배분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
- 이사회 기능 강화: 회사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책임을 강조
 - 이사회 핵심 역할이 강조되도록 원칙 재구성
 - 독립이사의 역할, 책임, 전문성, 독립성 등을 강조하며, 특히 지배주주가 있는 프라임(Prime) 시장¹ 상장기업은 이사회의 과반수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
- 정기주총 전 연차보고서 공시 확대: 해석지침에 주주총회 최소 3주 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올해 5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도쿄증권거래소(TSE) 상장사들은 2027년 7월까지 개정된 모범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제출 일정은 TSE가 발표할 방침임.

한편,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를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 “금융위, ‘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안내”, 2025년 7월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주충실의무’ 도입하고 ‘3%를’ 강화” 및 2025년 8월호 “국회, 상법 2차 개정안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참고)

¹ 도쿄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TSE) 상장 주식은 2022년부터 프라임(Prime), 스탠더드(Standard), 그로스(Growth) 등 세 가지로 재편된 바 있으며, 프라임 기업은 유통주식 시가총액 100억 엔 이상 등 일련의 조건을 충족하는 최상위 상장기업임.

EU, '26~'30년 성평등 전략 발표...임금, 고용기회, 리더십 참여 등 성평등 개선조치 제시

In Focus

3월 5일 EU 집행위원회가 '[2026~2030년 성평등 전략](#)(Gender Equality Strategy 2026~2030)'을 발표함.

집행위는 현재의 변화 속도로는 EU 내 완전한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약 50년이 걸릴 것이며 회원국 간 격차도 여전하다고 지적함.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전략은 2025년에 수립되어 모든 회원국의 지지를 받은 '[여성 권리 로드맵](#)(Roadmap for Women's Rights)'의 8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고 있음.

'여성 권리 로드맵' 8대 원칙



8대 원칙 중 '임금' 및 '고용' 관련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2026~2030년 전략은 다음과 같음.

'동일 임금 및 경제적 자립'

현황	개선 전략
- 남녀 임금 격차: 2024년 기준 EU 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 대비 11% 낮음 - 남녀 투자 접근성 격차: EU 보고서에 따르면, 테크 분야 벤처투자 중 창업자가 여성으로만 구성된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단 3%이며, 여성이 한 명 이상 포함된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도 15%에 불과함	- 임금투명성지침(Pay Transparency Directive)의 적시 이행 지원 (본 뉴스레터 2023년 6월호 "EU, '임금투명성지침' 발효...3년 내 회원국 자국 법에 반영" 참고) 2023년 ▲임금 투명성 강화(구직자에 대한 임금 정보 제공, 근로자의 임금 정보 요구 권한 부여, 남녀 임금 격차 공시 등) ▲임금 차별 보상 강화 등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각 EU 회원국은 올해 6월 7일까지 자국 법에 이를 반영하고 이행해야 함. - 여성의 투자 접근성 개선 - EU 투자금 중 여성 주도 기업·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 목표치를 현재의 25%에서 상향 조정 - EU 내 여성 기업가의 금융 접근성 및 금융 부문 의사결정권을 가진 여성 리더 비율 확대 - 여성의 디지털 역량 및 기업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동등한 고용 기회와 합당한 근로조건'

현황

- **남녀 고용률 격차:** 2024년 기준 EU 내 여성 고용률은 남성 고용률 대비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은 맞벌이 가구에 불리한 조세 구조, 유연 근무 환경 부족, 임금 불평등 등이 지적됨
- **기업 리더십 내 성별 불균형:** 2023~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EU 기업 이사회 중 여성 비율은 평균 36%이며, 국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개선 전략

- **성별 고용 격차 개선**
 - 2030년까지 고용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 사회권 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선언¹하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과 인종, 성별, 계층, 장애 등 다양한 정체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교차적 관점을 강화할 방침임.
- **'기업 이사회 내 성별 균형 지침(Directive on gender balance on corporate boards)'의 이행 지원 및 평가** (본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EU, '상장사 비상임이사 40% 여성 선임' 법 전면 시행...내년 6월 말까지 이행 필요" 참고)
 - 이 법에 따라 종업원 수 250명 이상의 EU 회원국 내 상장사는 올해 6월 30일까지 비상임이사의 40% 이상을 '과소대표되는' 성별, 즉 대부분의 경우 여성으로 구성해야 함.²
 - 집행위는 2029년까지 지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임.

EU 집행위는 많은 국가에서 성평등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EU 역내뿐 아니라 대외 활동에서도 '여성 권리 로드맵'의 원칙을 선도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힘.

또한 성평등은 모두가 함께 행동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전략은 EU 역내는 물론 비EU 국가, 국제기구 등 모든 협력 주체에게 성평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힘.

¹ 2017년 21세기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기회가 풍부한 사회적 유럽을 구축하기 위한 20가지 원칙(▲노동시장에서의 동등한 기회 ▲공정한 근로조건 ▲사회적 보호 및 포용 등을 3대 축으로 함)을 담은 '유럽 사회권 기둥'이 선언됨.

² 다만 회원국의 재량으로 성별 구성 요구사항을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에 모두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의 33%를 여성으로 구성해야 함.

IPSASB, 정부를 위한 '공공부문 기후 공시기준' 공식 발표 ...'28년 시행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IPSASB)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SRS) 시리즈의 첫 번째 기준서인 IPSASB SRS 1 '기후 관련 공시'를 공식 [발표](#)함. IFRS S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기준서는 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 적용도 허용됨.

이 공공부문 기후 공시기준은 2024년 10월 초안 발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승인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IPSASB, 정부를 위한 '공공부문기후 공시기준' 1호 승인...'28년 시행" 참고)

IPSASB 의장은 "정부의 의사결정이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 관련 정보는 공공재정 관리 강화에 필수적이며, 이번 공시기준은 기후 회복력 제고에 필요한 정부의 추가 자원 조달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기준의 의의를 강조함.



중국, AI 생성 표시 의무 위반 콘텐츠 단속...SNS 계정 1만 3천여 개 처분 및 위반 정보 54만여 건 삭제

2월 12일 중국 사이버관리국(CAC)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합성된 정보임에도 'AI 생성' 표시 없이 게시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발표](#)함.

배경

- 2025년 4월 중국 사이버관리국은 AI 기술로 생성 및 합성된 콘텐츠에 대해서 콘텐츠 내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9월 시행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5년 4월호 "중국, 9월부터 AI 생성 콘텐츠에 'AI가 만들었다' 표시 의무화" 참고)
 - 이에 따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기술적인 형태(예: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로 내장) 또는 명시적인 문구로 표시해야 함.

이번 단속 결과 CAC는 웨이보, 위챗 등 소셜미디어 계정 1만 3421개를 법과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위법·규정 위반 정보 54만 3천여 건을 삭제했다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자극적이며 폭력적인 콘텐츠(예: 화재현장 이미지, 동물이 사람을 잔인하게 해치는 영상), 감동적인 스토리 콘텐츠(예: 고속철도역에서 영아를 구하는 영상) 등을 AI로 생성해 트래픽을 유도하면서 AI 생성 사실을 미표시한 경우 등이 포함됨.

규제 당국은 앞으로도 엄격한 감독을 유지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AI로 생성된 자료임을 명확히 표시해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구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03

주목할 간행물



EY: Future of sustainability reporting operating model across financial services



EY가 2025년 25곳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거버넌스, 조직 운영, 데이터 및 기술 활용 등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발표함.

EY는 금융회사들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둘러싼 환경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ESG 정보보고·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그 주요 동인으로 ▲지정학적 긴장, 반ESG 운동 등으로 인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우선순위 변화 ▲불확실한 규제 환경 ▲예산 압박에 따른 효율성 증대 필요성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높은 시장 기대 ▲지속가능성 활동을 장기적 사업 기회로 인식하는 상업화 움직임 등을 제시함.

금융회사들은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 거버넌스의 현대화, 재무·리스크·컴플라이언스 등 일상적 업무와의 연계성 강화,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솔루션 도입,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담당자 안내

EY한영 Public Policy팀

이동근 부문대표 (파트너)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대표, Public Policy 리더

dongguen.lee@kr.ey.com

Public Policy 뉴스레터 편집팀: 김양희 팀장, 권혜숙 차장, 강태은 과장

EY한영 ESG Impact Hub

박재흠 파트너

EY한영 ESG Impact Hub 리더, 감사부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리더

jaeheum.park@kr.ey.com

뉴스레터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품질관리실 회계기준 김동길 파트너 품질관리실 감사기준 및 제도 정연웅 파트너

I 제작 EY한영 Public Policy 팀 (ey.pp.team@kr.ey.com)

I 뉴스레터 구독 신청 담당 EY 파트너 문의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Y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